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5

제출년월일 : 1999. 2.
제출자 : 영주시장

1. 제정이유

식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공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통합방위법(법률 제5264호, 97. 1. 13)이 세정됨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협의회는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협의회는 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바.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 가. 조례준칙(안) 1부.
- 나. 관련법령(발췌) 1부.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영주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대비 책
2. 통합방위작전·훈련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3.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
4. 취약지역 대비책
5.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표창·추천
6. 지역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통합방위작전 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8. 통제구역 설정
9.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이내로 구성되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시의회 의장
2. 지역책임 군부대장
3. 지역 국군기무부대 책임관
4. 국가정보원 지역수사관

5. 영주경찰서장

6. 영주시교육장

7.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작전담당간사

가. 특정경비구역, 군책임지역 - 지역책임부대 작전장교

나. 경찰책임지역 - 경찰서 경비과장 또는 지역책임부대 작전장교

2. 예비군담당간사 : 지역책임부대 예비군담당관

3.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4. 민방위담당간사 : 새마을과장

5.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전산담당관

④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직 위원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영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의회에 부의한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

1. 공보전산담당관, 총무·새마을과장

2. 지역책임군부대 작전장교, 예비군담당관

3. 경찰서 경비과장

4. 기타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

③기타 신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기치 협의회의 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행정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민방위협의회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그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통합방위 직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5조제3항에 규정된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②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되며, 실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반원은 각 분야별 지원반장이 된다.

③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동원, 건설·수송, 의료·구호, 통신, 보급, 홍보 및 재정 등의 분야로 구성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9인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분야별 지원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7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 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라. 관계기관의 협조에 적 침투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세종과 홍보활동

마. 거동수상지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거적 신고훈련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가. 10년생이상의 임목

나. 보래병기 또는 연꽃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헌한다.)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폐류 양식장의 설치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영주시방위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671

관수생략

경상북도

우702-702 대구 북구 산격동 1445-3 / 전화(053)950-2211 / 김준호

문서번호 총무33820 - 394

시행일자 1998. 3. 14.

(경 유)

받 음 시장·군수

참 조 총무·내무과장

제 목: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첩 시달

- 내부부 편성33820-181호('97. 8. 26)의 이첩 시달임.
- 통합방위법의 제정·시행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
관한조례(안)을 불임과 같이 이첩 시달하니 시·군 조례제정에 활용하기 바라며,
- 동 조례 제정시 지역방위협의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통합방위 본부의 요청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경상북도지사

총무과장 전철

○○시·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시·도 통합방위지위원회(이하 “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3항 제5호에 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약지역 대비책
2. 통제구역 설정
3.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1. 시도의회 의장
2. 군부대 지역사령관
3. 국군기무부대 지부장
4. 국가안전기획부 지부장
5. 지방검찰청 검사장
6. 지방경찰청장
7. 지방교정청장

8. 지방방무청장

9. 교육감

10.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 총무담당간사 : 내무국장

2. 민방위담당간사 : 민방위재난관리국장

3.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관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민방위협의회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되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부지사가 된다.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되며, 실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국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 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장이 정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
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 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
 - 나. 통행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
 -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
 -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개봉과
홍보활동
 -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 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 가. 10년생이상의 임목
 - 나. 모래빙커 또는 연못
 -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 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
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
 - 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폐류 양식장의 설치
 -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 책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발췌)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통합방위협의회) 1 <생략>

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② 시·도협의회와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방위 대비책
2. 을종 및 명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시·도협의회의 경우에 한 한다)
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4.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5.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중앙협의회·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음 각호의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지원본부) ①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읍장·면장·동장 소속하에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도통합방위지원본부와 시·군·구·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각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
5. 기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취약지역 관리) ① 통합방위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의 침투 또는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을 취약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교통 및 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 또는 벽지
 2. 간첩 및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의 은거활동이 용이한 지역
 3. 적의 저공 또는 저속항공기의 착륙이 용이한 개활지 또는 호수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취약지역에 대해 장애물의 설치 등 필요한 취약지역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7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법 제5조제1항의 특별시·광역시·도통합방위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의 시·군·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당해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당해 지역 국군기무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안전기획부 관계자
 4. 지방검찰청 검사장·자청장 또는 검사
 5.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지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병무관서의 장
 9. 교육감 또는 교육장
 10. 지방의회 의장
 11. 기타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 ②~⑥ <생략>